

의안번호	2126430
의 퇴 인	박성중 의원
회 답 일	2024. 3. 5.
추계번호	24B0121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억원(연평균 1억 4,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해 예산사업을 추진 중인 조항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조항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종합계획 수립	100	0	0	100	0	200	40
실태조사	100	100	100	100	100	500	100
계	200	100	100	200	100	700	140

주: 1. 각 재정수반요인 별로 가정한 용역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를 둠(제1항)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0조(관리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5항)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의무규정
7	안 제11조(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5조(정보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1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와 협의체(이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구성·운용,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11	안 제17조(모의훈련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모의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을 토대로 한 소관 분야별 재난대비훈련으로 봄(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훈련의 주기·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9조(원인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2.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재난·장애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전문가 또는 전담기관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제4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재량규정
13	안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디지털서비스설비 등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대책을 수립·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재난·장애등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 및 유사한 디지털서비스 재난·장애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4	안 제22조(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등에 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예측·예방·점검·대응을 위하여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는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재난·재해의 수습 등과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봄(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3조(설비의 통합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재난·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디지털서비스의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와 다른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 또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디지털서비스설비(이하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를 보유한 자의 디지털서비스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함. 다만, 자가디지털서비스설비가 디지털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함(제2항)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16	안 제25조(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17	안 제26조(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8	안 제27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등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설비 및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정보,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등 및 그 대응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공유 및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19	안 제32조(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5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2022년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2022년 제3차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기본계획 등

- 1) 안 부칙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 2) 안 부칙 제4조(등급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은 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시설의 등급으로 본다.
- 3) 안 부칙 제7조(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이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로 본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	—	• 미대상: 제정안 부칙 제3조1)에 따라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로 대체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통신재난관리 운영지원 (위원회운영)</td><td>6.4</td><td>6.4</td><td>8</td></tr>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통신재난관리 운영지원 (위원회운영)	6.4	6.4	8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통신재난관리 운영지원 (위원회운영)	6.4	6.4	8																
4	안 제7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2021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등																
5	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담기관은 현행 사업을 통해 용역기관이 수행했던 기존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전담기관 운영예산은 기 편성된 2개 사업에 포함된 인건비 규모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r> <td>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인건비)</td><td>389</td><td>421</td><td>823</td></tr>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인건비)</td><td>423</td><td>498</td><td>1,266</td></tr> <tr> <td>합계</td><td>812</td><td>919</td><td>2,089</td></tr> </table> 주: 내역사업 내 기관 인건비만 발채한 예산이므로, 타 조문의 현행 사업 예산과 일부 중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인건비)	389	421	823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인건비)	423	498	1,266	합계	812	919	2,089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인건비)	389	421	823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인건비)	423	498	1,266																
합계	812	919	2,089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6	안 제10조(관리계획의 수립)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10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시행계획은 그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7에 따른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보호조치’가 통합된 계획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수립 및 집행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 업무 위탁용역)</td><td>271</td><td>271</td><td>387</td></tr>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디지털서비스 장애 탐지 기반 구축운영)</td><td>-</td><td>-</td><td>184</td></tr>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td><td>-</td><td>-</td><td>120</td></tr> <tr> <td>합계</td><td>271</td><td>271</td><td>691</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 업무 위탁용역)	271	271	387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디지털서비스 장애 탐지 기반 구축운영)	-	-	18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	-	120	합계	271	271	691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 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 업무 위탁용역)	271	271	387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디지털서비스 장애 탐지 기반 구축운영)	-	-	18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	-	120																				
합계	271	271	691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1조(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에 따른 '통신재난 관리계획 이행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이행 점검이 통합된 점검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수립 및 집행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업무 위탁용역)</td><td>45</td><td>45</td><td>107</td></tr> <tr> <td>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위탁용역)</td><td>222</td><td>253</td><td>398</td></tr>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디지털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td><td>-</td><td>-</td><td>38</td></tr>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td><td>105¹⁾</td><td>105¹⁾</td><td>185</td></tr> <tr> <td>합계</td><td>1,318</td><td>1,349</td><td>728</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체 주1) '24년 예산부터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에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사업으로 이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업무 위탁용역)	45	45	107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위탁용역)	222	253	398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디지털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	-	-	38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105 ¹⁾	105 ¹⁾	185	합계	1,318	1,349	728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업무 위탁용역)	45	45	107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위탁용역)	222	253	398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디지털서비스 장애탐지 기반 구축운영)	-	-	38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105 ¹⁾	105 ¹⁾	185																								
합계	1,318	1,349	728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2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른 배타적 임차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배타적 임차사업자의 현황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사업자들이 보안 및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아 점검 대상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9	안 제15조(정보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	- 미대상: 제정안 부칙 제4조2)에 따라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을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시설의 등급으로 대체 - 통신시설 등급 지정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업무 위탁용역)</td><td>10</td><td>10</td><td>10</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업무 위탁용역)	10	10	10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디지털 재난관리업무 위탁용역)	10	10	10																
10	안 제16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16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협의체'는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한 '기간·부가·데이터센터 사업자 협의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며,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기존 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운영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기간 협의체)</td><td>14</td><td>14</td><td>14</td></tr>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부가데이터센터 협의체)</td><td>—</td><td>—</td><td>20</td></tr> <tr> <td>합계</td><td>—</td><td>—</td><td>34</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기간 협의체)	14	14	1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부가데이터센터 협의체)	—	—	20	합계	—	—	34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위탁용역 수행 (기간 협의체)	14	14	1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부가데이터센터 협의체)	—	—	20																
합계	—	—	34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7조(모의훈련의 실시)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17조에 따른 모의훈련은 그간 시행해 온 재난대비훈련과 유사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재난대비훈련에 소요된 예산으로 실시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모의훈련)</td><td>34</td><td>34</td><td>102</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모의훈련)	34	34	102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모의훈련)	34	34	102								
12	안 제19조(원인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재난·장애등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이 원인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의 분야, 빈도, 규모 등의 예측 및 원인조사의 단가 등 추계가 어려움								
13	안 제20조(복구 및 재발 방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재난·장애 등의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디지털서비스의 재난·장애의 분야, 빈도,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14	안 제22조(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	—	• 미대상: 제정안 부칙 제7조3)에 따라 종전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로 대체 — 방송통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공무원 등 기존 본부 운영 체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운영 가능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5	안 제23조(설비의 통합 운용)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3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중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본 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관련 예산이 없고, 향후 디지털서비스 재난·장애 발생 시 재난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자가 디지털서비스 설비의 통합 운용에 수반되는 재정 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16	안 제25조(연구개발)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5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연구활동의 목적 및 세부과제 내용, 지원 단가, 지원물량 등 추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기획이 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17	안 제26조(전문인력 양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26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의 세부 내용, 지원 단가, 지원물량 등 추계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기획이 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								
18	안 제27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27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방송통신재난관리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 중인 ‘통신설비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운영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통신설비 안전관리기반 구축·운영)</td><td>1,116</td><td>1,327</td><td>2,717</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통신설비 안전관리기반 구축·운영)	1,116	1,327	2,717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통신설비 안전관리기반 구축·운영)	1,116	1,327	2,717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9	안 제32조(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안 제32조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는 안 제27조의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 조치를 의미하며, 현행 시스템 보안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운영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역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 </thead> <tbody> <tr> <td>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시스템 보안)</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110</td></tr> </tbody> </table> 주: 내역사업 중 해당 예산 발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시스템 보안)	-	-	110
내역사업명	2022	2023	2024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운영 (시스템 보안)	-	-	11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근거해 기존에 예산사업을 추진 중인 조항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 등을 제외하고, 안 제5조(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안 제7조(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1차 및 4차 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실태조사)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산업 현황과 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에 각종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억원으로 추계(연평균 4,000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2022년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 2022년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1억원으로 가정

[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중장기 계획	집행액
2022	나노기술종합 발전계획	150
2022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기본계획	90
2022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3]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 수립	100	0	0	100	0	200	4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태조사(안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에 각종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억원으로 추계(연평균 1억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 2021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2022년 전자문서 산업 및 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 등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를 1억원으로 가정

[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실태조사	집행액
2020	우주산업실태조사	130
2021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150
2022	전자문서 산업 및 이용 실태조사	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내용 참조

[표 5]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100	100	100	100	100	500	10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